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審 査 報 告 書

2006. 11. 1.
제254회 임시회

1. 심사 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10월 11일
- 회부일자 : 2006년 10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6. 10. 25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곽 연 창)

가. 제안 이유

- 보건·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각종 검사 및 연구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시험장비 확충이 불가피함에도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함은 물론 지반 약화로 인해 시설확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부득이 다른 장소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려는 것이며
- 백두대간 주변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많은 사료들을 청소년 물론 도민들이 보고 체험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을 신축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재산의 취득

《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 》

- 위 치 :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내(지원시설용지)
- 사업규모
 - 부지매입 : 10,000m²
 - 건물신축 : 지하1층/지상4층 5,000m²
- 사업기간 : 2007. 1 ~ 2009. 12(3년간)
- 사 업 비 : 12,000백만원(도비)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 》

-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 1-4(도유림)
- 신축규모 : 지상 2층 850m²
- 사업기간 : 2007. 1 ~ 2008. 12(2년간)
- 사 업 비 : 2,500백만원(국비 1,250)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2007년도 공유재산의 종합적인 관리내용을 담은 본 계획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으로 토지 10,000m²(15억원)와 건물 5,850m²(130억)을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임.

- 본 사업은 1987년도에 부지 4,142㎡, 연건축면적 2,805㎡로 건축된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50번지에 소재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 신축하는 계획임.
- 최근 보건 및 환경의 신규업무가 날로 확대됨에 따른 기구·인원의 증원으로 사무실 및 실험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 첨단 시험분석·연구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시험·분석 결과의 오류 발생하고 있으며,
- 또한, 실험실과 분해실이 공존으로 인해 유해가스에 의한 연구원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 면적 10,000㎡, 연건축면적 5,000㎡, 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2007~2009까지 3년간 계획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반 인프라를 개선·확충하는 사업임.
- 이는 보건의료·생명기술과학의 종합 집적화 핵심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가기관, BT전문대학원 등 연구지원시설과 효율적인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최적의 연구환경 시설을 배치 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선정 및 신축 계획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12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도비가 소요되는 만큼 재원확보 계획 및 건축물 신축비 105억원 산정근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특히, 기존의 청사의 처리방안과 동일 필지내에 추진하고 있는

오송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 건축물 양식과 배치 등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음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에 관한 사항임.

- 본 계획은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4번지 도유림에 건물신축 850㎡,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국비와 도비 각각 50%씩 투자하는 사업임.
- 백두대간 주변지역의 우수한 문화 등 인문자원을 자연생태와 연결시켜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경기 활성화
- 백두대간에 대한 사료 전시 및 체험시설,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건전한 백두대간 체험 및 학습장 제공을 도모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이미지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조령산자연휴양림내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자연휴양림의 부대시설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의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5

제출연월일 : 2006년 10월 1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보건·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각종 검사 및 연구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시험장비 확충이 불가피함에도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함은 물론 지반 약화로 인해 시설확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부득이 다른 장소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려는 것이며
- 백두대간 주변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많은 사료들을 청소년은 물론 도민들이 보고 체험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을 신축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재산의 취득

《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 》

- 위치 :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내(지원시설용지)
- 사업규모
 - 부지매입 : 10,000m²
 - 건물신축 : 지하1층/지상4층 5,000m²
- 사업기간 : 2007. 1 ~ 2009. 12(3년간)
- 사업비 : 12,000백만원(도비)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 》

-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 1-4(도유림)
- 신축규모 : 지상 2층 850m²
- 사업기간 : 2007. 1 ~ 2008. 12(2년간)
- 사 업 비 : 2,500백만원(국비 1,250)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비 고
계	14,500,000		
○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	12,000,000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	2,500,000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5. 관계법령 : 별 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관 계 법 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6항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 10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 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